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19

2020. 04. 27.
기획경제위원회

Ⅰ.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2월 5일, 이성배 의원 외 11명

나. 회부일자 : 2020년 2월 12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20.04.27.)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이를 “출연금”으로 명시하고 있어「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예산과목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조제2항제1호, 같은 조제3항의 “시의 출연금”을 “기금전출금”으로 각각 변경함.

- 출 연 금 : 지자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 기금전출금 :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에 전출하는 경비

나. 제명 등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정비함(안 제7조).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원인 서울시의 출연금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는 기금 수입항목으로의 변경을 통해 조례 용어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현황

○ 서울시는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965년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운용해오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투자계정을 신설해 융자계정과 분리해 운용하고 있음.

○ 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이하 ‘융자계정’)의 운용 규모는 3,232억 8천 1백만원으로, 중소기업 직접 융자금(시설 및 경영안정자금 2.0~2.5%)과 시중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1.0~2.5%) 등으로 지출됨[1].

<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 계획>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합 계	323,281	합 계		323,281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74,045	사업비	융자금	265,000
			이차보전금	46,020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		시스템 유지보수비	99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729
예치금회수	76,036	기본경비		1,000
		재무활동	예치금	7,815
일반회계 전입금	70,200		예수금 이자	2,618

○ 융자계정과 시중은행협력자금을 합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총 2조 1,05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2,650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 1조 8,400억원)을 조성해 소상공인들에게 융자 지원 중에 있음.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이 중 1조 6백억원의 재원으로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한 특별 융자를 시행 중임.

1) 제292회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462억원을 추가 전출하였음

<최근 2년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증감
합 계	17,000	21,050	4,050
중소기업육성기금	3,000	2,650	△350
시중은행협력자금	14,000	18,400	4,400

○ 한편 투자계정의 2020년 운용 규모는 563억 2백만원임.

- 투자계정은 4차산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6개 분야의 혁신성장펀드[2]에 출자해 서울 소재 유망한 창업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음.

<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 계획>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합 계	**56,302**	**합 계**	**56,302**
예치금회수	21,097	비융자성사업비	52,021
		혁신성장펀드	52,021
		4차산업혁명펀드	9,000
예수금	30,200	스마트시티펀드	9,637
		제2호서울바이오펀드	9,330
		문화콘텐츠펀드	5,300
이자수입	198	창업지원펀드	10,050
		재도전지원펀드	8,325
		위탁사업비	379

2) 혁신성장펀드는 4차산업혁명, 스마트시티, 서울바이오, 문화콘텐츠, 창업지원, 재도전지원 등 6개 분야에 대해 서울시가 일정규모(펀드별 총 조성액의 10~20%)를 출자하고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투자금을 합해 조성하고 있으며, 전문 펀드운용사가 펀드를 결성, 8년(투자 4년, 회수 4년) 동안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기타수입	4,807	기본경비	42
		예치금	3,044
		예수금원리금상환	1,195

다. 기금의 조성 재원 용어 정비 (안 제4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제3항)

○ 현행 조례는 기금의 조성 재원을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에 출연금・보조금・차입금・예수금 및 융자 상환금과 ▹기금 회수금으로 명시하고 있음.

○ 개정안은 조례상의 기금 재원인 “시의 출연금”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하 ‘기금운용기준’)에 맞춰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민간 및 법인에게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경비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 외로 설치・운영하는 기금의 조성재원 성격으로는 적합하지 않음.

○ 이러한 문제로 인해 행정안전부는 종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출연 경비를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으나, 2013년부터 이를 “전입금”으로 변경해 기금운용기준을 운영하고 있음.

2012년	2020년
① 출연금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224) 및 기초단체의 광역단체에의 사업비 부담금(227-01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계상	① 전입금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721) 및 자치단체 간 부담금(222-01) 등 계상

- 현행 기금운용기준의 기금 수입항목은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9개 과목임[참고자료1].

○ 다만 개정안에서는 “시의 기금전출금”으로 변경 제안하였으나, 일반·특별회계의 세출 항목에서는 “전출금”으로 표기하고, 받는 기금에서는 이를 “전입금”으로 표기하는 것이 기금운용기준에 적합함.

○ 따라서 개정안의 “기금전출금”은 “전입금”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금의 다른 수입항목 또한 기금운용기준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기금전출금 2. 융자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 출연금·보조금·차입금·예수금 및 융자상환금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3. 보조금·차입금·예수금 및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

개 정 안	수 정 의 견
4.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된 기금의 회수금	4.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된 융자금 회수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기금전출금	1. 시로부터의 전입금
2. 투자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3. 그 밖에 출연금·보조금·차입금·예수금	3. 보조금·차입금·예수금 및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
4.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투자된 기금의 회수금	<삭 제>
③ (생 략)	③ (개정안과 같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부합하는 기금 수입과목으로 수정해 용어 사용 혼재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기금 조성 재원 항목을 기금수립기준의 수입과목에 부합하도록 각각 수정하고, 직위 명칭을 현행에 맞게 변경함.

Ⅵ.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11명, 전원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319

제안년월일 : 2020년 4월 27일
제 안 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부합하는 기금 수입과목으로 수정해 용어 사용 혼재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기금 조성 재원 항목을 기금수립기준의 수입과목에 부합하도록 각각 수정함(안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안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안 제4조제2항제4호 삭제).

○ 직위 명칭을 현행에 맞게 수정함(안 제7조제1항제2호, 안 제9조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 본문 외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3.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된 융자금 회수
4. 보조금·차입금·예수금 및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

안 제4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3. 보조금·차입금·예수금 및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

안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9조제2항제1호 중 “소상공인지원과장”을 각각 “소상공인정책담당관”으로 하고, 안 제9조제2항제1호 중 “공정경제과장”을 “공정경제담당관”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융자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 출연금·보조금·차입금·예수금 및 융자상환금 4.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된 기금의 회수금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투자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 출연금·보조금·차입금·예수금 및 융자상환금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기금전출금** 2. **융자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 출연금·보조금·차입금·예수금 및 융자상환금** 4.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된 기금의 회수금**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기금전출금** 2. **투자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 출연금·보조금·차입금·예수금 및 융자상환금**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개정안과 같음) 1. **시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3.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된 융자금 회수** 4. **보조금·차입금·예수금 및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 ② (개정안과 같음) 1. **시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3. **보조금·차입금·예수금 및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4.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된 기금의 회수금	4.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된 기금의 회수금**	**<삭 제>**
③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와 제2항제1호에 따른 시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와 제2항제1호에 따른 시의 **기금전출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전출**할 수 있다.	③ (개정안과 같음)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1. 기금운용관 : 기금운용 **담당 정책관** 2. 분임기금운용관 : 소상공인지원과장(융자계정), 경제정책과장(투자계정) 3. 기금출납원 : 소상공인지원 담당사무관(융자계정), 펀드조성 및 운용 담당사무관(투자계정) ②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운용 **담당정책관** 2. 분임기금운용관 : **소상공인지원과장**(융자계정), 경제정책과장(투자계정) 3. 기금출납원 : 소상공인지원 담당사무관(융자계정), 펀드조성 및 운용 담당사무관(투자계정) ②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운용 담당정책관 2. 분임기금운용관 : **소상공인정책담당관**(융자계정), 경제정책과장(투자계정) 3. 기금출납원 : 소상공인지원 담당사무관(융자계정), 펀드조성 및 운용 담당사무관(투자계정) ②~ ③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생략)	제9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제9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위원장은 기금운용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 융자계정: 소상공인지원과장, 공정경제과장	1. 융자계정: **소상공인지원과장**, **공정경제과장**	1. 융자계정: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2. 투자계정: 경제정책과장	2.~3. (현행과 같음)	2. 투자계정: 경제정책과장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민간경제단체 임직원, 금융인, 중소기업인 및 교수 등 관계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민간경제단체 임직원, 금융인, 중소기업인 및 교수 등 관계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3.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된 융자금 회수
4. 보조금·차입금·예수금 및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3. 보조금·차입금·예수금 및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

③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와 제2항제1호에 따른 시의 기금전출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전출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사무중" 을 "사무 중" 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을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으로 하며,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 을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 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담당 정책관” 을 “담당정책관”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상공인지원과장” 을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을 “지방회계법” 으로 하고, “경리관” 을 “재무관” 으로 하며, 같은 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을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소상공인지원과장” 을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으로 하고, “공정경제과장” 을 “공정경제담당관”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융자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 출연금·보조금·차입금·예수금 및 융자상환금 4.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된 기금의 회수금	제4조(기금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 1. 시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3.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된 융자금 회수 4. 보조금·차입금·예수금 및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투자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 출연금·보조금·차입금·예수금 및 융자상환금 4.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된 기금의 회수금	② (현행과 같음) 1. 시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3. 보조금·차입금·예수금 및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 <삭 제>
③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와 제2항제1호에 따른 시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와 제2항제1호에 따른 시의 기금전출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전출할 수 있다.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현 행	개 정 안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운용 **담당 정책관** 2. 분임기금운용관 : **소상공인지원과장**(융자계정), 경제정책과장(투자계정) 3. 기금출납원 : 소상공인지원 담당사무관(융자계정), 펀드조성 및 운용 담당사무관(투자계정)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운용 **담당정책관** 2. 분임기금운용관 : **소상공인정책담당관**(융자계정), 경제정책과장(투자계정) 3. 기금출납원 : 소상공인지원 담당사무관(융자계정), 펀드조성 및 운용 담당사무관(투자계정)
②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②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생략)	제9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기금운용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1. 융자계정: **소상공인지원과장**, **공정경제과장** 2. 투자계정: 경제정책과장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민간경제단체 임직원, 금융인, 중소기업인 및 교수 등 관계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생략)	1. 융자계정: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2. 투자계정: 경제정책과장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민간경제단체 임직원, 금융인, 중소기업인 및 교수 등 관계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현행과 같음)